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전번호 2013 - 11 - 029호(사건번호 : 201301조사001)

안 건 명 남인천방송(주)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감액 지급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남인천방송(주)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 1길 16
대표이사 김인태

의결연월일 2013. 2. 20.

주 문

1.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 조항 중, 매출액이 변동되어 프로그램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14,48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주문 1)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경 과

‘12. 12. 7 : 남인천방송, PP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 공문 발송

‘12. 12. 11 ~ ‘13. 1. 18 : 사건 인지 및 사실 조사

‘13. 1. 21 ~ ‘13. 2. 3 : 조사자료 분석 및 법률자문

‘13. 2. 4 ~ ‘13. 2. 15 : 시정조치(안) 의견 조회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연수구를 관할구역으로 150여개의 PP와 채널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SO이다.

< 피심인 현황 >

(‘12.12월말 기준)

가입자수(단위:명)			방송 매출액*	순이익	최초 허가일
아날로그	디지털	계			
-	-	-	-	-	‘94.4.1

* 방송수신료, 장비임대료 및 광고수익 등 전체 방송매출액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11.12.13일 OCN 등 147개 PP와 ‘12년도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 송출용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상품 매출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기별 또는 연말에 사용료를 소급(증액, 차감)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규정하였다.

< 프로그램공급 계약서 중 사용료 조정 관련조항 >

▪ 제5조 가항 : “갑”의 방송상품 매출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반기별 또는 연말에 별도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소급(증액, 차감)하여 정산한다.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적절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법규 >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II.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3.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절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4. 시정조치 명령

가. 계약조항의 변경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PP와의 프로그램 공급 계약조항 중, 매출액이 변동되어 프로그램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방식·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조항의 변경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85조의2제3항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방송법 제85조의2 및 제10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3 및 제70조에 의거하여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과징금 부과 상한액 >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3호에 따른 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100이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방송법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의3,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48,277만원이다.

< ② 기준 과징금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3호, '12.1.13. 이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관련매출액 산정

본 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액('관련매출액')은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 판매수익,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익 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연평균 매출액은 2,413,885만원이다.

< 피심인 연평균 매출액 >

(단위 : 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매출액
매출액	2,117,504	2,497,515	2,626,636	2,413,885

(나) 기준과징금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삭감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을 자발적으로 147개 PP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하고 부과기준율은 0.1%를 적용한다.

<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 범위 >

(단위 : 만원)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중대성 약함 (부과기준율 0.6% 이하)	중대 (부과기준율 0.6%~1.2%)	매우 중대 (부과기준율 1.2%~1.8%)
2,413,885	14,483 이하	14,483 ~ 28,966	28,966 ~ 43,449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과징금은 2,413만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기준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관련 필수적 조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필수적 조정 또는 추가적 가중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 적용하지 아니 하며, 추가적 감경과 관련해서 조사협조로 인하여 20%를 감경하고 자발적 시정으로 인하여 20%를 감경하여 최대치인 총 4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기준 과징금에서 40%를 감경한 1,448만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 론

상기 피심인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 02. 2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계 철	(인)
	부위원장	김 충 식	(인)
	위 원	홍 성 규	(인)
	위 원	김 대 희	(인)
	위 원	양 문 석	(인)